

공개 자료

한-UAE CEPA 상세설명자료

2026. 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1. 서문,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1
2.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4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18
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27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29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31
7. 무역구제	35
8. 서비스무역	37
9. 디지털 무역	47
10. 지식재산권	49
11. 정부조달	56
12. 투자 원활화 협력	62
13. 경제협력	63
14. 중소기업	67
15. 분쟁해결	69
16. 예외	75
17. 협정의 운영	76
18. 최종규정	77

서문 주요 내용

-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 포함
 - 양국의 긴밀한 관계, WTO상 권리·의무 존중, 상품·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확장, 기술 협력 증진, 우호적인 환경 제공, 무역·투자 장벽 축소 또는 철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지지, 투명한 법적·상업적 체계 수립, 호혜적 협력 강화, 입법·규제 유연성 보전 등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주요 내용

- 일반 정의
 - 협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customs duty), 일(days), 조치(measure) 등 2개 이상의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 관세(customs duty)의 정의
 -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과금

※ 관세에서 제외되는 항목

- ①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②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 ③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 ④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 목적

-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촉진

☐ 지리적 적용범위

한 국	아 략 에 미 리 트
1)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2)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아랍에미리트가 국제법 및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영토, 자국의 자유지역을 포함한 내수,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및 수역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 다른 협정과의 관계

-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
-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즉시 서로 협의

☐ 지역 및 지방 정부

- 양 당사국은 지방정부 및 중앙·지방 정부로부터 권한 행사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이 협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

☐ 투명성

-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행정판정과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협정을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함

☐ 비밀 정보

-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

2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개요

- ☐ (상품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의 면세 등 상품 시장접근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은 협정문 본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 ☐ (비관세 조치) 수입허가, 수출입 수수료 등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상품 협정문

1. 내국민 대우 (제2.3조)

- ☐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당사국 상품에 내국민 대우* 부여

* 수입상품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될 때 세금과 과징금, 법률, 규칙 등에 있어 차별 없이 내국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 ☐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일 경우에도 관세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채택의 가능성을 차단해 예측 가능성에 기여하는 현상동결 원칙(standstill) 규정

- ☐ 부속서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양허표에 따른 관세율보다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낮을 경우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3.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확대 [제2.5조]

- ☐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속서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거나 양허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의무 부여
- ☐ 한쪽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철폐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양허표상 합의한 수준으로 관세율 재인상 가능

4. 상품 분류 및 양허표의 전환 [제2.6조]

- ☐ 각 당사국의 HS코드에 따라 상품을 분류
- ☐ 양허표 전환 작업 진행 시 부록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 결과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으며, 상품위에서 채택할 전환 지침 준수

5. 수출입 제한 [제2.7조]

- ☐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이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 상품에 대하여 수출입제한을 금지하며, 수출입을 제한할 경우, 상대국에 해당 조치 공표 및 요청시 협의 진행

6. 수입허가 [제2.8조]

- ☐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에 어긋나는 수입허가 조치 채택 금지

- ☐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 도입 전, 당사국은 정부 공식 웹사이트 공표 등을 통해 해당 조치 사전 공표

7. 수출 보조금 (제2.10조)

- ☐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농업협정」 등에 따라 수출보조금 채택 또는 유지를 금지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철폐 재확인

8. 국제수지 보호조치 (제2.11조)

- ☐ 양 당사국은 국제수지 목적상의 제한조치 부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 하되, 1994년도 GATT 제12조 및 「1994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제한적으로 국제수지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9. 행정수수료 및 형식 (제2.12조)

- ☐ 수출입과 관련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은 1994년도 GATT 제8조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인터넷에 공개

* 수출입시 부과되는 수수료 및 과징금은 실제 행정상 소요된 비용을 초과할 수 없고 국내 생산 보호나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될 수 없음

10. 비관세조치 (제2.13조)

- ☐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이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 하고,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해 비관세조치 채택 또는 유지 금지
- ☐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자국 법, 규정 및 절차 등이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지 않도록 보장

- 한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 ▲ 해당 조치를 문제 제기한 이유, ▲ 그 조치가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 ▲ 가능할 경우 해결책을 포함한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 상품위에 검토 요청 가능
- 상품위는 90일 내 상호 합의된 해결 확보를 위해 즉시 해당 조치 검토

11. 상품의 일시반입 (제2.15조) 및 일부 상품에 대한 면세 (제2.17조)

- 양국은 일부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제2.15조)
 - ※ 일시 반입 대상 상품
 -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물
 -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 장비 운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및 팔레트
 - 이는 판매 및 임대 금지, 각국 국내법상 허용되는 일시반입 기간 내 반출, 합리적 수량 이내 반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로 한정
- 양국은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에 대해 원산지과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 허용 (제2.17조)

12. 수리개조 후 재반입 (제2.16조)

- 양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

13. 상품무역위원회 (제2.18조)

-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 매년 1회 또는 한쪽 당사국이 요청시 상호 합의된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따라 회합
-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관세 철폐 가속화 또는 범위 개선 협의 등 당사국 간 상품무역 증진, ▲비관세조치 등 상품무역 장벽에 대한 검토,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에 따른 양허표 최신화 조치 등을 포함

상품 양허 상세 내용

- 한-UAE CEPA를 통해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달성하고, 관세철폐 대상 전품목에 10년내 철폐 합의

※ 최종 자유화율 : (韓) 품목수 92.5% 수입액 72.3% (UAE) 품목수 91.2%, 수입액 82.0%

- 중동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UAE로 수출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부품, 화학제품,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등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철폐 확보
- 우리 수출 유망 분야인 K-푸드, K-뷰티, K-방산 품목들의 관세 철폐 확보로, 미국, 일본, EU 등 경쟁국 대비 UAE 시장 선점 효과 기대
- 단, UAE는 FTA 협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양허제외되는 금지 품목(Prohibited)* 및 특별관심품목(Special Goods)**을 운영

* 썸는담배, 산동물, 상아, 마약류, 석면제품 등으로 수입 자체를 금지

** 전자·제조담배, 주류,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등으로 종교·건강상의 이유로 규제

- 우리는 원유의 관세(3%)를 철폐하고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의 관세(0.5%)를 감축*하여,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 모색

* 나프타는 양측이 상호 5년간 50% 관세감축으로 합의

- 다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대추야자(30%), 낙타유(36%), 카놀라유(5%) 등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품목 위주로 관세철폐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시장 영향 최소화라는 두가지 효과가 동시에 기대될 전망

< 한-UAE CEP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UAE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전체	11,293	100%	15,492	100%	7,856	100%	4,270	100%
즉시 철폐	8,887	78.7%	1,581	10.2%	3,830	48.8%	809	18.9%
5년 철폐	1,135	10.1%	5	0.0%	953	12.1%	57	1.3%
10년 철폐	422	3.7%	9,617	62.1%	2,385	30.4%	2,635	61.7%
최종 관세철폐율	10,444	92.5%	11,203	72.3%	7,168	91.2%	3,500	82.0%
관세감축	1	0.0%	4,276	27.6%	4	0.1%	0	0.0%
양허제외	848	7.5%	14	0.1%	684	8.71	769	18.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 한-UAE CEP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양허단계	UAE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LNG, LPG(프로판, 부탄), 유연탄, 무연탄, 코크스, 에틸렌, 대추야자, 카놀라유, 사료용 조제품, 물, 소주, 소스(겨자, 된장, 춘장 등), 파스타, 코코아조제품, 당류(원당, 포도당, 당밀 등), 식물성 한약재, 철강재용기, 철구조물, 농약, 필름, 금, 니켈스크랩, 알루미늄괴, 동광, 기타 금속광물, 백시멘트, 스마트폰부품, 원동기부품, 방사선기기, 승용차(중고), 무계육 강관, 기타전자응용기기부품, 프린터, 가열 난방기부품, 냉각기, 자동차부품, 원동기, 타일, 집적회로반도체 등	8,887	즉시 철폐	3,830	화물자동차, 특장차, 캠핑카, 기타 자동차부품, 초산비닐, 에틸렌중합체 필름, 향수, 메이크업제품, 면도용제품, 포병무기, 탄약, 기타무기류부품, 꿀, 버섯, 고추, 밤, 감귤, 포도, 참외, 사과, 배, 딸기, 귤감, 떡, 김치, 반도체제조용장비, 혼합크릴렌, 레이저 프린터, 컴퓨터부품, 컨트롤러, 밸브, 기타 항공기부품, 자동제어기, 저압 배전반, 컴퓨터, 광케이블, 스캐너, LCD, 통신선, 계측기부품, 냉방기부품, 기타의료용기기, 인쇄회로, 주석광, 에틸렌중합체필름 등
프로필렌, 부틸렌, 정밀화학원료(스테아르산, 타르타르산, 살시실산 등), 포도주, 인삼음료, 앞담배, 효모, 베이커리제품, 면류(당면, 국수, 냉면 등), 오트밀, 마데, 명란, 참치(냉동), 향수, 질소비료, 평판디스플레이, 유선통신 장비부품, 레이더, 다이아몬드, 도료, 안전유리, 필기구, 주단강, 주방용품, 거울, 알루미늄박, 의약품, 접착제 등	1,135	5년 철폐	953	발포성 폴리스티렌, 기타정밀화학원료, 피부 연화제, 두발용제품, 위생용품, 트랙터, 차량용의자, 냉장고부품, 로켓 발사기, 조미김, 인삼, X선및방사선기기, 언더셔츠, 인쇄용지, 골프용품, 광택제, 승용완구, 속도계, 압연기, 기타광학기기, 센서, 나일론사, 편직물(날염), 섬유기계, 화물자동차, 인쇄기계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안경, 커팅공구, 낚시용구 등
원유, 벙커씨유, 역청유, NGL, 윤활유, 경유, 기타석유제품, 폴리프로필렌, 낙타유, 대두유, 올리브, 소시지, 참기름, 과일주스, 사료, 기타낙농품, 오징어, 새우, 칠면조고기, 왁스, 기타합성수지, 복합비료, 연괴, 포트랜드시멘트, 순면사, 남성셔츠, 알루미늄관, 스포츠용품 등	422	10년 철폐	2,385	에어컨, 냉장고, 냉방기, 승용차(가솔린,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소형화물차, 타이어, 연축전지, 클러치, 완충기, 제동장치, 서스펜션, 저밀도에틸렌, 고밀도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관, 세안용품, 선크림, 라면, 인스턴트 커피, 폴리에스터직물, 기타철도차부품, 기타 건설중장비, 예폭시수지, 영화비닐수지, 중후판, 아연괴, 동관, 타이어튜브 등
-	10,444	철폐 소계	7,168	-
나프타	1	관세 감축	4	나프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뱀장어, 넙치, 건조수산물(멸치, 명태, 조기 등),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단판적층재, 옥시디에탄올, 폴리카보네이트, 벤젠, 초산비닐, 아크릴산에틸 등	848	양허 제외	684	페타이어, 석면·석면제품, 전자담배 부분품, 가축(양, 돼지 등), 담배, 주류, 돼지고기·조제품, 상아 등
-	11,293	총합계	7,856	-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1. 공산품 [임산물 포함]

1. **[UAE 양허]** 공산품에서 품목수 기준 91.5%(5,720개), 수입액 기준 89.9%(34.6억불)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주력 수출)** 우리의 對UAE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가전 등(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주방가전 등)에서 관세철폐 확보

○ **(자동차·부품)** UAE의 지속적인 자동차 수요 증가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판매도 확대되고 있는바, 자동차·부품 **쏘품목의 관세 철폐** 확보를 통해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기대

* 對UAE 자동차 판매 대수 : 1.7만대('22년) → 2.1만대('23년) → 2.5만대('24년)

- 특히,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관세 철폐를 확보하여**, 지속 성장중인 UAE의 친환경차 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UAE는 '50년까지 등록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을 목표로 에너지 전략 2050, 탄소중립 2050 등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

○ **(화학제품)** UAE는 산업 전반(포장재, 건설, 자동차, 헬스케어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가 지속 증가중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쏘품목 관세 철폐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시장 다변화 기대

* UAE 플라스틱 산업은 원재료(합성수지) 기준으로는 순수출국에 가깝지만, 반제품, 완제품, 특수 수지 등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

○ **(가전)** 사막기후를 가진 UAE의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의 관세 철폐를 확보하여**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수출 확대 기대

* UAE 가전시장은 주택건설, 스마트시티,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등에 따라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며, '30년까지 약 60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수출 유망) K-뷰티, K-방산 등 지속적으로 UAE의 수요가 성장중인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여 현지 진출 가속화 기대

○ (화장품) K-뷰티의 인기에 따라 對UAE 수출도 지속 증가중인, 메이크업 제품, 기초 화장품 등 화장품 소품목 관세 철폐 확보

* 對UAE 화장품 수출 : 5,814만불('22년) → 8,972만불('23년) → 17,137만불('24년)

○ (무기류) UAE는 방산 수요가 높으며 우리의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무기류 소품목 관세 철폐 확보

* '22년 UAE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II'의 35억불 수출 계약(단일 무기 기준 최대 실적)

2. [우리 양허] 공산품에서 품목수 기준 96.4%(8,960개), 수입액 기준 72.3%(111.9억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원유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정유산업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 기대

- 다만, 국내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석유화학제품은 일부 소수 품목만 장기 관세철폐로 개방하고, 업계 민감성이 높은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등의 목재류는 양허제외

< 한-UAE CEP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UAE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즉시 철폐	8,212	88.3%	1,571	10.1%	2,815	45.0%	805	20.9%
5년 철폐	549	5.9%	3	0.0%	813	13.0%	54	1.4%
(5년 이내)	8,761	94.2%	1,573	10.2%	3,628	58.0%	860	22.3%
10년 철폐	199	2.1%	9,617	62.1%	2,092	33.5%	2,601	67.6%
철폐 소계	8,960	96.4%	15,478	72.3%	5,720	91.5%	3,461	89.9%
양허 제외	336	3.6%	13	0.1%	502	6.4%	388	9.1%
금지품목	-	-	-	-	15	0.2%	0	0.0%
특별관심품목	-	-	-	-	12	0.2%	0	0.0%
관세 감축	1	0.0%	4,276	27.6%	4	0.1%	0	0.0%
합계	9,297	100%	15,478	100%	6,253	100%	3,849	10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 한-UAE CEP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UAE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LNG, LPG(프로판, 부탄), 유연탄, 무연탄, 코크스, 에틸렌, 철강재용기, 철구조물, 농약, 필름, 금, 니켈스크랩, 알루미늄괴, 동광, 기타금속광물, 백시멘트, 스마트폰 부품, 원동기부품, 방사선기기, 승용차(중고), 무게측량관, 기타전자응용기기 부품, 프린터, 가열난방기부품, 냉각기, 자동차부품, 원동기, 타일, 집적회로 반도체 등	8,212	즉시 철폐	2,815	화물자동차, 특장차, 캠핑카, 기타자동차부품, 초산비닐, 에틸렌중합체필름, 수, 메이크업제품, 면도용제품, 포병무기, 탄약, 기타무기류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혼합크릴렌, 레이저프린터, 컴퓨터부품, 컨트롤러, 밸브, 기타항공기부품, 자동제어기, 저압 배전반, 컴퓨터, 광케이블, 스캐너, LCD, 통신선, 계측기부품, 냉방기부품, 기타의료용기기, 인쇄회로, 주석광 등
프로필렌, 부틸렌, 정밀화학원료(스테아르산, 타르타르산, 살시실산 등), 향수, 질소비료, 평판디스플레이, 유선통신장비부품, 레이더, 다이아몬드, 도료, 안전유리, 필기구, 주단강, 주방용품, 거울, 알루미늄박, 의약품, 접착제 등	549	5년 철폐	813	발포성 폴리스티렌, 기타정밀화학원료, 피부 연화제, 두발용제품, 위생용품, 트랙터, 차량용의자, 냉장고부품, 로켓발사기, X선및방사선기기, 언더셔츠, 인쇄용지, 골프용품, 광택제, 승용완구, 속도계, 압연기, 기타광학기기, 센서, 나일론사, 편직물(날염), 섬유기계, 화물자동차, 인쇄기계부품, 안경, 커팅공구, 낚시용구 등
원유, 벙커씨유, 역청유, NGL, 윤활유, 경유, 기타석유제품, 폴리프로필렌, 왁스, 기타합성수지, 복합비료, 연괴, 포트랜드시멘트, 순면사, 남성셔츠, 알루미늄관, 스포츠용품 등	199	10년 철폐	2,092	에어컨, 냉장고, 냉방기, 승용차(가솔린,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소형화물차, 타이어, 연축전지, 클러치, 완충기, 제동장치, 서스펜션, 저밀도에틸렌, 고밀도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관, 세안용품, 선크림, 폴리에스터직물, 기타철도차부품, 기타건설중장비, 에폭시수지, 영화비닐수지, 중후판, 아연괴, 동관, 타이어튜브 등
나프타	1	관세 감축	4	나프타
파티클보드, 단판적층재, 옥시디에탄올, 폴리카보네이트, 벤젠, 초산비닐, 아크릴산에틸 등	336	양허 제외	529	페타이어, 석면·석면제품, 전자담배부분품, 제트유, 종이류 등
-	9,297	총계	6,253	-

< 한-UAE CEPA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위	한국 양허 (對UAE 주요 수입품)				UAE 양허 (對UAE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 (백만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 (백만불)	UAE 양허
1	석유(원유)	3	7,462	10년 철폐	승용차(가솔린 1,500-3,000CC)	5	166	10년 철폐
2	나프타	0.5	4,276	50% 감축	타이어 (신형)	5	119	10년 철폐
3	석유(원유)	3	1,603	10년 철폐	귀금속장식품 (금)	5	115	즉시 철폐
4	천연가스	3	640	즉시 철폐	승용차(가솔린, 사륜구동, 1,500-3,000CC)	5	109	10년 철폐
5	벙커씨유	3	363	10년 철폐	제트유	5	82	양허 제외
6	알루미늄 괴 (alloy)	1	185	즉시 철폐	기타자동차부품	5	74	즉시 철폐
7	알루미늄 괴 (비합금)	1	134	즉시 철폐	승용차(가솔린 1,500-3,000CC)	5	64	10년 철폐
8	백금 웨이스트	3	132	즉시 철폐	승용차(가솔린, 사륜구동, 1,500-3,000CC)	5	53	10년 철폐
9	석유(원유)	3	70	10년 철폐	승용차(가솔린, 사륜구동, 3,000CC 초과)	5	52	10년 철폐
10	기타 석유(원유)	3	52	10년 철폐	기타자동차부품	5	47	10년 철폐
11	액화 프로판가스	3	42	즉시 철폐	연축전지 (엔진시동용)	5	46	10년 철폐
12	석유(원유)	3	37	10년 철폐	기타항공기부품	5	43	10년 철폐
13	기체액화용 기기 (가정용 제외)	5	24	즉시 철폐	제동장치	5	42	10년 철폐
14	납 괴	3	17	10년 철폐	가정형 식기세척기	5	39	10년 철폐
15	알루미늄 괴 (합금)	3	12	즉시 철폐	클러치	5	39	10년 철폐
16	윤활유	7	10	양허 제외	알루미늄판 (0.2-0.4mm)	5	38	양허 제외
17	철제 저장조	8	9	즉시 철폐	완충기	5	36	10년 철폐
18	기타 알루미늄합금	1	7	즉시 철폐	기타석유제품 (피치)	5	36	10년 철폐
19	경(硬)아연 스펠터	2	4	즉시 철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5	36	10년 철폐
20	폴리에틸렌	6.5	3	10년 철폐	폴리에스터직물	5	35	10년 철폐
	(20대 수입소계)		15,083		(20대 수출소계)		1,271	
	공/임산물 수입합계		15,478		공/임산물 수출합계		3,849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 관세율 : '23년 WTO MFN 실행세율

2. 농수산물

1. [UAE 양허] 농수산물에서 품목수 기준 90.3%(1,448개), 수입액 기준 9.5%(4천만불)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이슬람 문화권인 UAE 특성상 돼지고기, 주류, 담배 등 약 100개 품목(3.8억불, 90%)을 금지·특별 관심 품목 지정, FTA 협상 대상에서 원칙적 양허제외

- (K-푸드) 글로벌 성장과 함께 우리의 對중동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K-푸드 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여 수출 가속화 기대

* '25.10월 K-푸드 누적 수출액은 약 86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하였으며, 권역별 수출 증가율은 중동(20.4% ↑), 유럽연합(14.8% ↑), 북미(13.9% ↑) 순

- (가공식품) 주요 수출품인 라면, 과자, 음료, 조미김 등 외에도, 꽃감, 삼계탕, 커피믹스, 김치, 소스, 어류통조림 등의 관세 철폐 확보
- (건강기능식품) 면역 증진 효능 등으로 인기있는 홍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K-건강식품 수출이 증가 중인바, UAE의 관세 철폐를 통해 시장 진출 발판 마련
- (신선식품) 인삼, 전복, 견과류 등 우리 관심 신선 농수산물의 관세를 철폐하여 對UAE 수출 경쟁력 확보

2. [우리 양허] 농수산물에서 품목수 기준 74.3%(1,996개), 수입액 기준 90.7%(1.5천만불)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국내 생산이 없거나(대추야자, 낙타유, 카놀라유 등) 對UAE 수입액이 적은(육류(양고기, 오리고기 등), 어류 기름, 주스 등) 품목 위주로 관세 철폐하여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 확대 도모
- 다만, 우리 전통 민감 품목인 식량작물(쌀, 감자 등), 축산물(닭고기 등), 낙농품(꿀, 치즈 등), 과실류(사과, 배 등), 냉동 어류(갈치, 명태, 대구, 고등어 등) 등은 수입액과 무관하게 양허 제외하여 업계 보호

< 한-UAE CEPA 농수산물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UAE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즉시 철폐	675	33.8%	11	72.8%	1,015	63.3%	4	0.9%
5년 철폐	586	29.4%	3	17.2%	140	8.7%	3	0.6%
(5년 이내)	1,261	63.2%	13	90.0%	1,155	72.1%	6	1.5%
10년 철폐	223	11.2%	0	0.7%	293	18.3%	34	8.0%
철폐 소계	1,484	74.3%	13	90.7%	1,448	90.3%	40	9.5%
양허 제외	512	25.7%	1	9.3%	44	2.7%	3	0.8%
금지품목	-	-	-	-	19	1.2%	0	0.0%
특별관심품목	-	-	-	-	92	5.7%	377	89.7%
미철폐 소계	512	25.7%	1	9.3%	155	9.7%	381	90.5%
합계	1,996	100%	15	100%	1,603	100%	421	1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 한-UAE CEPA 농수산물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UAE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대추야자, 카놀라유, 사료용 조제품, 물, 소주, 소스(겨자, 된장, 춘장 등), 파스타, 코코아조제품, 당류(원당, 포도당, 당밀 등), 식물성 한약재 등	675	즉시 철폐	1,015	꿀, 버섯, 고추, 밤, 감귤, 포도, 참외, 사과, 배, 딸기, 꽃감, 떡, 김치, 냉동어류(대구, 명태, 참치 등), 어류통조림(청어, 뱀장어 등) 등
포도주, 인삼음료, 잎담배, 효모, 베이커리제품, 면류(당면, 국수, 냉면 등), 오트밀, 마테, 어육(틸라피아, 메기, 연어 등), 명란, 참치(냉동) 등	586	5년 철폐	140	조미김, 인삼, 과당시럽, 맥아당, 과일·채소 주스, 게(조제·보존), 멸치(염장), 갑오징어·오징어(활·신선·냉장) 등
낙타유, 대두유, 올리브, 소시지, 참기름, 과일주스, 사료, 기타낙농품, 오징어, 새우, 칠면조고기 등	223	10년 철폐	293	라면, 인스턴트 커피, 베이커리제품, 기타 소스류, 과자, 전복(활·신선·냉장), 문어(냉장), 갑오징어·오징어(조제·보존) 등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뱀장어, 넙치, 건조수산물(멸치, 명태, 조기 등), 분유, 치즈, 고구마, 생강 등	512	양허 제외	155	담배, 주류, 돼지고기·조제품, 상아 등
	1,996	총합계	1,603	-

< 한-UAE CEPA 주요 수출입 농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한국 양허 (對UAE 주요 수입품)				UAE 양허 (對UAE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불)	UAE 양허
1	정제유	5	9,649,327	즉시철폐	퀄런(담배 함유)	100	374,850,640	양허제외
2	와플과 웨이퍼	8	1,272,788	5년철폐	마카로니 등 (새의 알을 넣은 것)	5	9,273,584	10년철폐
3	기타정당	30	927,675	양허제외	라면	5	8,445,640	10년철폐
4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8	557,213	5년철폐	인스턴트 커피	5	3,601,360	10년철폐
5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	40	470,381	즉시철폐	케이크	5	2,633,785	10년철폐
6	갈치(냉동)	10	307,150	양허제외	빵	5	1,750,423	10년철폐
7	대추야자	30	275,593	즉시철폐	마카로니 등 (기타)	5	1,414,167	양허제외
8	감자조제품	20	233,944	5년철폐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100	1,225,751	양허제외
9	로알제리	8	228,432	5년철폐	기타 소스류	5	878,544	10년철폐
10	빵제조용재료	513	87,619	양허제외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	5	829,739	5년철폐
11	상어 간유	3	72,960	즉시철폐	팝콘, 칩 등	5	713,603	10년철폐
12	기타두류	20	70,188	5년철폐	음료베이스(기타)	5	674,921	10년철폐
13	기타식물성유지	5	64,522	즉시철폐	식이보조제	5	672,419	10년철폐
14	과실주스 음료	9	64,113	10년철폐	사료용 조제품 (기타)	5	656,559	10년철폐
15	기타유지가공품	8	50,933	즉시철폐	스위트 비스킷	5	582,386	10년철폐
16	기타 버터	89	35,592	10년철폐	주류(기타)	특별 관심 품목	428,881	양허제외
17	기타농산가공품	45	31,259	양허제외	인삼 추출물	5	418,400	즉시철폐
18	기타향신료	8	28,637	5년철폐	농산가공품(기타)	5	392,547	5년철폐
19	혼합조미료	45	25,490	5년철폐	김(식용)	5	377,480	즉시철폐
20	기타 어류(냉동)	10	23,774	즉시철폐	기타 면류	5	357,693	양허제외
	(20대 수입소계)		14,477,590		(20대 수출소계)		410,178,522	
	농수산물 수입합계		14,604,460		농수산물 수출합계		420,692,247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 관세율 : '23년 WTO MFN 실행세율

개요

- (원산지 규정)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 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
 - 원산지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기준(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원산지 재료 생산기준을 적용
 - 최종 제품에 투입된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 누적 허용, 세번변경 기준 미충족시에도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상품 공장도가격(EXW)의 15% 이하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기준, 중간재 롤업 원칙 등 보충규정 도입
 -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에는 비원산지 재료 사용시에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 규정
 -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특정 상품의 처리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개성공단 재가동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의 한-UAE CEPA 특혜관세 논의 기반 마련
- (원산지 절차)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 특혜관세 대우 신청 절차 및 원산지 검증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 (원산지 증명) 기관증명 및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자율증명은 순차적으로 도입
 - (특혜관세대우 신청)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
 - (원산지 검증) 관세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및 수출국에 정보를 서면 요청할 수 있고, 수출국 방문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1. 원산지 기준 [제3.2조]

- 한-UAE CEPA 이행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다음을 규정
 -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았으나, 제3.4조에 따라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2.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3조]

-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11개 호로 규정
 - 당사국에서 채배, 수집 또는 수확된 식물 및 식물 생산품
 - 당사국에서 출생·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당사국에서 사육된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당사국에서 추출·채취된 광물 생산품 또는 천연자원
 - 당사국에서 수렵, 땃사냥, 어로, 양식 등으로 획득된 상품
 -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수역 밖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수산물
 - 양 당사국의 해저, 해상, 또는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하층토에서 획득되거나 추출된 어획물·수산물 외의 생산품
- *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

- 당사국에서의 사용·소비 또는 제조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 그리고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

3.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제3.4조)

- 상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하거나 상품의 인정가치포함 비율이 본선인도가격(FOB)의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여겨지고,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다만,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된 상품은 그 상품에 대해 목록에 기술된 규정을 충족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인정가치포함비율(Qualifying Value Content)은 다음과 같이 산정

$$Q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가격(EXW)}\}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가격(EXW)}} \times 100\%$$

- 공장도가격(EXW)이 사용된 경우, 인정가치포함비율은 본선인도가격(FOB)에 기초하여 계산된 인정가치포함비율보다 5퍼센트 포인트 낮음

4. 중간재 (제3.5조)

- 비원산지 재료를 투입한 중간재가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여 최종재 생산에 사용될 때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롤업 원칙)

5. 누적 (제3.6조)

-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가공 또는 생산되는 완성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은 완성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다만, 다른 쪽 당사국에서 불충분 작업 또는 가공(제3.8조)을 넘어서 가공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상품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 유지

6. 허용치(미소기준) (제3.7조)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공장도가격(EXW)의 15% 이하일 경우, 해당 상품(제50류-63류 제외)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섬유·의류(제50류~제63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또는 가격이 상품의 중량 또는 공장도가격(EXW)의 10% 이하일 경우, 해당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7. 불충분 작업 또는 가공(불인정공정) (제3.8조)

-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요건(제3.4조)이 충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되었다고 해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불인정공정을 규정
- 동물의 도축, 상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보존 공정, 상품의 단순 혼합, 부품의 단순한 조립,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포장의 변경 및 해체 등을 규정

8. 간접재료 (제3.9조)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고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재료*는 원산지 재료로 취급됨

* 에너지 및 연료, 설비 및 장비, 기계 및 공구 포함

9.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3.10조]

- ☐ 상품과 함께 인도된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음
- 다만, 그 상품이 인정가치포함비율(QVC)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부속품 등의 가치는 인정가치포함비율(Q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됨

10.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3.11조]

- ☐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음
- 다만, 그 상품이 인정가치포함비율(QVC)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인정가치포함비율(Q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됨

11.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제3.13조]

- ☐ 상품의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 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음

12.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제3.14조]

-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 판정은 물리적 분리를 통하거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거나 달리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을 통함

*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동안 지속 사용되어야 함

13. 상품의 세트 (제3.15조)

- ☐ HS 통칙 3에 정의된 세트는 모든 구성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원산지 상품이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세트의 공장도가격(EXW)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트 전체가 원산지 상품임

14. 영역 원칙 (제3.16조)

- ☐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 ☐ 당사국 영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으로 재반입되는 경우, 비당사국에서 상품 보존을 위해 필요한 공정 외에 어떠한 공정도 없었을 경우에만 원산지 지위를 유지
 - ☐ 상품이 한쪽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어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후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비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의 공장도가격(EXW)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유지
 - 다만, 상품에 인정가치포함비율(QVC)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획득된 총 부가가치는 최종 생산품에 대해 기재된 인정가치포함비율(QVC) 이상이어야 함
 - ☐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특정 상품의 처리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고, 그 논의의 개시부터 3년 내에 논의를 마치기로 합의
- *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UAE CEPA 특혜관세 수혜 기회 마련을 위한 조항

15. 통과 및 환적 (제3.17조)

- ☐ 상품이 수출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

- 다만, 상품이 중간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유지
 - 중간 경유국에서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을 경우
 -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수입 당사국의 특정 국내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라벨의 추가 또는 부착, 경유국 세관 감독 하에 수행되는 화물의 분리, 또는 상품의 보존을 위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16. 원산지 증명 (제3.19조, 제3.20조)

- 원산지 증명 방식을 기관증명 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기관증명)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국의 발급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부속서 3-나)를 발급
 - (자율증명)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신고서(부속서 3-다)에 의한 원산지 증명, 송장·인도증서 등에 인쇄하여 작성되는 방식

17.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제3.21조)

- 양 당사국은 전자 원산지 증명서 전송의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EODES)을 개발할 수 있음
 - 양측은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 EODES 개발을 위한 작업반을 설치

18. 특혜관세대우 신청 절차 (제3.23조, 제3.24조)

-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
 - 관세 가격 미화 1,000불(수입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

- ☐ 아울러, 수입자는 수입 시점 이후에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19. 원산지 검증 [제3.26조]

- ☐ 수출국을 통한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서면검증 및 수출국과 동행하는 방문검증을 규정
 - 다만, 방문검증은 서면검증 절차가 수행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음
- ☐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서면검증 요청일부터 회신이 없거나, 회신이 불충분할 경우 요청한 당사국은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음

20. 기록 유지 요건 [제3.25조]

- ☐ 제조업자, 생산자, 수출자 및 관할당국은 상품의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동안 유지하도록 규정
- ☐ 수입자는 원산지 상품 증명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동안 유지하도록 규정

21.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부속서 3-가]

- ☐ 우리측 주요 수출품의 생산공정 및 원자재 해외 조달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신선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
- ☐ 부속서 3-가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의 원산지 기준은 제3.4조에 따라 일반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QVC40)” 적용
- ☐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 (석유제품)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 40% 외에도
▲ 화학반응, ▲ 상압증류, ▲ 감압증류 공정기준을 규정하여 해당 공정
중 하나가 당사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원산지 인정
- (화학) 대부분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 40%
- (철강) 일반기준(CTH 또는 QVC40) 적용
- (자동차) 일반기준(CTH 또는 QVC40) 적용되나, 상품과 부품·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인정가치
포함비율 40% 적용하여 역외산 부품·부속품 사용 허용
- (기계, 전기·전자) 일반기준(CTH 또는 QVC40) 적용되나, 상품과 부품·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 40% 적용하여 역외산 부품·부속품 사용 허용

□ 주요 농수산물 원산지 규정

-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으로 엄격한 기준 도입
- 우리 수출 유망품목인 소스류, 스낵류, 음료 등 가공식품은 일반기준
(CTH 또는 QVC40)이 적용되어 주요 재료 역외산 사용 가능
- 다만, 홍삼, 김 조제품, 분유 등에 대해서는 주요 재료는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에 합의하여 국내 생산 기반과 수출을 연계

개요

-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정보의 공표 및 이행가능성, 사전 심사, 상품의 반출, 특송화물, 재심사 및 불복청구 등을 규정
 - (사전심사) 수입자, 수출자 등이 품목분류, 원산지 충족여부, 관세평가 기준 등의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특송화물) 통상적인 경우, 상품 도착 및 필요 정보 제출 후 특송 화물의 통관이 신속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심사 및 불복청구) 관세 관련 행정결정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불복청구 및 재심사를 보장

상세내용

1. 정보의 공표 및 이행가능성 (제4.4조)

- 이해관계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인터넷에 신속하게 영어로 관세법과 관련 절차를 공표
- 이해관계인의 문의를 다루는 문의처를 두어 투명성을 확보

2. 사전심사 (제4.7조)

- 수입자,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원산지 충족여부, 관세평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심사제도 규정

-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90일 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
- 허위 정보가 제공된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 변경 가능

3. 상품의 반출 (제4.9조)

- ☐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 채택 및 유지
 - 보세창고 반입 없이 도착지에서 반출을 허용하는 부두직통관제도 규정

4. 특송화물 (제4.12조)

- ☐ 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 절차 채택 및 유지
 - 전자적 수단을 통한 통관정보의 일괄 제출, 통관서류 최소화, 통상적인 경우 통관정보 제출 후 신속한 반출 허용 등을 규정

5. 재심사 및 불복청구 (제4.14조)

- ☐ 관세당국의 행정결정에 대하여 행정적 불복청구·재심사와 사법적 불복청구·재심사를 보장
 - 각 당사국은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및 결정이유를 서면으로 제공

6. 관세협력 및 위원회 설치(제4.15조, 제4.17조)

- ☐ 양국 관세당국은 정보교환 활성화 및 관세협력 강화 등을 위해 세관 상호지원협정의 이행을 지속
- ☐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운영 등을 도모

개요

- ☐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에 관한 기본 원칙과 협력 체계를 규정
- ☐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SPS 조치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방지

상세내용

1. 정의 (제5.1조)

- ☐ SPS 협정 부속서 A의 정의를 준용하여 SPS 조치, 동식물 건강 보호 조치 등 관련 개념을 WTO SPS 협정과 동일하게 적용

2. 목적 (제5.2조)

- ☐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양국간 협력·소통 및 투명성을 강화하며, SPS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정당하지 않은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

3. 적용 범위 (제5.3조)

- ☐ 양 당사국의 SPS 조치 중 직·간접적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

4. 일반 규정 (제5.4조)

- ☐ WTO SPS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정보교환, 협력강화, 협의 등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규정
- ☐ SPS 관련 사안은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 적용 제외

개요

- ☐ 본 장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된 조치(TBT)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율
- ☐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TBT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 하며, 양국 간 규제 투명성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원활화 도모

상세내용

1. 정의(제6.1조) 및 목적 (제6.2조)

- ☐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상의 정의를 준용하고, 기술 규정·표준·적합성 평가절차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며, 규제 협력과 모범규제관행의 확대를 증진

2. 적용범위 (제6.3조)

- ☐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표준·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하되 정부조달 및 SPS 조치는 제외

3. TBT 협정 확인 (제6.4조) 및 국제표준 (제6.5조)

- ☐ WTO TBT 협정상 기존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국제표준을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 사용

- 국제표준 존재 여부 판정시, WTO TBT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 결정으로 채택한 국제표준의 개발원칙(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 참여에 대한 개방성, 공정성 등)을 근거로 사용

4. 기술규정 [제6.6조]

- ☐ 일방 당사국이 당사국 간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의 교섭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불수용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
- WTO TBT 위원회와 같은 국제포럼에서 기술규정의 동등성 관련 논의에 대한 당사국의 의사소통 및 협력 강화

5. 적합성 평가절차 [제6.7조]

- ☐ 일방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다른쪽 당사국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메커니즘을 명시
- ☐ 자국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대한 만족스러운 보장을 제공하는 한, 가능한 경우 언제나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결과를 수용
- ☐ 상대국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교섭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
- ☐ 국가와 지역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능성을 고려할 의무 규정

6. 협력 [제6.8조]

- ☐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건강·안전 및 환경보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의 규제기관 간 협력 증진, 모범규제관행의 이행을 통한 무역 촉진 등의 목적을 위해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 강화

- 협력 목적 달성을 위해, 위험관리 원칙에 기초한 모범규제관행의 증진, 기술규정의 질과 효과 향상을 위한 정보 교환, 건강·안전·환경 등에 대한 위험관리 및 기만적 관행 방지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 적절한 경우의 시장 감시 정보의 교환 등을 포함한 규제 문제에 대해 상호 합의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 협력

7. 투명성 [제6.9조]

-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이 채택했거나 채택하고자 제안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의 목적과 취지를 포함한 정보를 합리적 기간 내에 제공
-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택하려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한 후 60일간 의견 수렴기간을 제공
 - 통보된 조치에 대해서 다른쪽 당사국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적절히 고려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
- 수출 당사국의 생산자가 제안된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공표와 발효 사이 합리적인 시간 간격(시행 유예기간) 부여

8. TBT 위원회 [제6.10조]

- TBT위원회는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이행과 운영의 촉진·점검, 표준·기술규정·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개선에 대한 협력 강화 등 기능을 수행
- 연락처는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UAE는 산업 및 선진기술부 표준규제부문 또는 그 승계기관이며, 그 변동 사항은 상대측에 신속히 통보

9. 정보 교환 및 기술 논의 (제6.11조)

- ☐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이를 합리적인 기간 (가능한 한 60일 내) 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
- ☐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기술 논의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접촉선에 통보하여 기술 논의 개시 노력

개요

- ☐ 반덤핑 및 상계 관세는 WTO 협정과 통일된 규범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관된 규정 해석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
- ☐ CEP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상세내용

1. 적용 범위 (제1절)

- ☐ 이 장은 한국의 경우 무역위 또는 그 승계기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경제부 또는 그 승계기관의 조사 및 조치에 적용됨

2.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제2절)

- ☐ WTO 협정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
 - 최종판정 전 조치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필수적 사실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
- ☐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하기 전 상대국에 서면 통지를 전달하고, 상계 관세 조사에서는 개시 전 협의 기회를 제공
- ☐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피해 제거에 필요한 수준 이하의 관세 부과가 가능함을 명시
- ☐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항은 CEPA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외

3. 양자 세이프가드 (제3절)

- ☐ CEPA 특혜 관세 적용의 결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인하 정지 또는 MFN 관세율까지 관세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 협정발효로부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기간 + 5년 내 발동 가능
 - 발동기간은 2년 이하, 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3년이 최대 한도)
 - ☐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조사 진행 중에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
 - 잠정조치는 조사개시로부터 최소 45일 이후에 부과할 수 있으며, 조치 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고, 최대 200일까지만 적용 가능
 - ☐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적용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를 제공
 -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해 합의 실패시 조치 적용국가의 상품에 대해 조치와 실질적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양허 정지가 가능
 - 단,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고 절대적 수입 증가로 인한 조치인 경우, 조치 발동으로부터 최초 24개월 간 양허 정지 금지
- *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절대적 수입증가 및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최초 3년 간 보복금지 규정(WTO 세이프가드협정 제8.3조)

4.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절)

- ☐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WTO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양자와 다자 조치의 동시 발동을 금지
- ☐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은 CEPA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외

개요

- 한-UAE CEPA 서비스 분야는 제8장 본문, 제8장 부속서(총 5개)로 구성
 - 부속서 8-가 :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 통신
 - 부속서 8-다 :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1 :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8-라-2 : UAE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RCEP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며 UAE측은 온라인 게임, 시청각 등의 분야에서 UAE가 그간 체결하여 온 CEP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

서비스무역 협정문

1. 적용범위 [제8.2조]

-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
 - 다만 항공 운송 서비스*, 정부조달, 정부 보조금,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제외

※ 항공 운송 서비스 중 항공기 보수 및 유지,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지상 조업 서비스는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

2. 일반적 의무

□ 시장접근(Market Access)(제8.3조)

- 양허표에 시장접근 약속을 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서비스 공급자의 수 또는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금지되는 시장접근 제한 조치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 ②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 ③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 ④ 고용인의 총수 제한
- ⑤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의 제한
- ⑥ 외국인 자본 참여의 제한

□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제8.4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비교하여 자국에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
 - 즉, 내국민대우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동등대우 의무를 의미

□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제8.7조)

- 협정 발효 후,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통보되는 협정을 체결할 경우, 상대국 요청 시 상대국에 그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국내규제 (제8.9조)

- 개방한 분야에 있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

- ☐ 서비스 공급을 위해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가능한 한 서면으로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 승인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조치에 규정된 권한에 기초하고, 그 자체로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
- ☐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에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합리적으로 빈번한 간격으로 시험 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인이 시험 응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
- ☐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의 취득, 유지, 개정 및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서면으로 공개
 - ※ 존재하는 경우, 특히 다음을 포함 ① 요건 및 절차, ② 관련 당국 연락처, ③ 수수료, ④ 기술표준, ⑤ 신청에 관한 결정의 불복청구나 재심사 절차, ⑥ 면허나 자격 조건 준수를 점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절차, ⑦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 ⑧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
- ☐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 관련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조치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하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며, 절차가 공정하고 그 자체로 요건 충족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음을 보장

4. 인정 (제8.10조)

- ☐ 상대국 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하기 위하여 당사국 또는 관련 기관간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거나 자발적으로 인정 가능
- ☐ 비당사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자격·면허를 협정이나 약정을 통해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 요청 시 상대국에게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 기회를 부여할 의무

5. 지불 및 송금 [제8.11조]

- ☐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과 지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용
 -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송금이나 지불을 제한할 수 있음
- ※ ① 차별적이지 않으며, ② 국제통화기금협정과 일치하며, ③ 상대국의 상업적·경제적·재정적 이익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④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으며, ⑤ 일시적이어야 할 것

6. 혜택의 부인 [제8.15조]

- ☐ 제3국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대국의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paper company)에게는 동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금융서비스 부속서(부속서 8-가)

1. 적용범위 및 정의

- ☐ 원칙적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
- ☐ 단,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다음의 서비스 및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 ① 중앙은행(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통화 관련 국가기관(예: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 또는 통화, 환율정책을 관할하는 공공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
 - ② 법정사회보장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 ③ 공공기관이 정부의 계좌로, 또는 정부의 보증하에, 또는 정부의 금융 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 다만, 금융서비스 부속서가 적용 배제되는 ②, ③의 경우에도 해당 금융서비스가 상업적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 등과 경쟁하여 공급하도록 허용된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부속서가 적용됨

2. 국내규제

- ☐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 건전성 목적 조치를 도입할 당사국의 권한을 확인

①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②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 ☐ 서비스무역 장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고객의 금융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3. 인정

- ☐ 자국의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조화를 통하거나, 협정·약정에 기초, 또는 자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분쟁해결

- ☐ 금융분야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해 금융분야의 국가-국가 분쟁시 패널은 금융전문가로 구성

통신서비스 부속서(부속서 8-나)

- ☐ 통신 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 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

- ☐ 서비스 교역의 토대가 되는 통신 서비스 관련,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1. 적용 범위

- ☐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 조치에 적용(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방송 및 케이블 배급 등은 적용 배제)

2. 접근 및 이용

- ☐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대국 사업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한 공중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
- ☐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 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및 단말기 등 장비의 공중통신망 부착과 관련된 기술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3. 경쟁보장장치

- ☐ 지배적 사업자가 반경쟁적 행위(교차보조 등)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 부담

※ 지배적사업자: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4. 상호접속

- ☐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가 상대국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한 조건의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

5. 그 밖의 조치

- ☐ (번호이동성) 자국 영역의 공중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이동성 제공을 보장
- ☐ (보편적 서비스)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비차별·경쟁중립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장
- ☐ (허가 절차) 자국이 허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공개
- ☐ (통신규제기관) 통신규제기관이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분리되도록 보장하고, 동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
- ☐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등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투명·비차별적으로 시의적절히 시행
- ☐ (통신 분쟁해결) 협정문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 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 신청, 사법적 심사 요청 가능
- ☐ (투명성) 요율 및 기타 서비스 요건, 조치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정보 등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부속서 8-다)

1. 일반 원칙 [제1항]

- ☐ 양국의 법 및 규정과 양허표의 약속에 따라 자연인의 입국과 일시 체류를 촉진하고,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한 조치를 수립하려는 양국의 공동의 희망 반영

2. 일반 의무 [제2항]

- ☐ 이 장에 따른 서비스 무역을 지연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적용

3.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 [제3~6항]

- ☐ 신청 절차 및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에 규정된 범위에서 상대국 자연인의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함을 명시

※ 우리는 부속서 8-라-1에서 ① 기업내전근자(ICT), ② 상용방문자(BV), ③ 서비스 판매자(SS), ④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 UAE는 부속서 8-라-2에서 ① 상용방문자(BV), ② 기업내전근자(ICT)로 구분하여 약속

4. 투명성 [제7~9항]

- ☐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상대국에 제공
 - 협정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가능한 한 입국 및 일시 체류 요건에 관한 정보를 공표 및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을 규정
 - 양허표에 명시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 ☐ 양허표에 명시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와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 수립 또는 유지
- ☐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또는 신청의 결과에 대한 결정을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5. 협력 [제10항]

- ☐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대국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협력 분야를 논의할 수 있음을 규정

6. 분쟁해결 [제11~14항]

- ☐ 관련 당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협의를 거쳐 호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
- ☐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따른 입국 허용 거부에 대해, ①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pattern of practice)과 관련이 있고, ② 영향을 받은 자연인이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완료했을 경우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제15장) 적용 가능

양허 주요내용 [부속서 8-라-1 및 부속서 8-라-2]

1. 전반적 개방 수준

- ☐ 양측 모두 WTO GATS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
 - 우리나라는 항공·해상 운송, 관광, 통신 등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RCEP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 UAE측은 온라인 게임, 시청각 등의 분야에서 UAE가 그간 체결하여 온 CEP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

2. UAE측 양허 수준

- ☐ UAE측은 우리측 관심분야인 온라인 게임, 의료, 시청각, 건설 분야 등에 대해 UAE 기체결 FTA 최고 수준으로 개방

- (온라인 게임) UAE 기체결 협정 최초로 게임 서비스 시장 개방
 - ※ 면허 및 승인 조건, 현지 설립 시 외국인 지분 49% 제한
- (의료)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 허용
 - ※ (의원급) 현지 병원 설립시 70% 지분제한(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서 100% 허용)
 - (병원급) 현지 병원 설립시 100% 지분 허용, 경제적수요심사(ENT) 조건(두바이 헬스케어시티에서는 ENT 불필요)
- (시청각 서비스) 영화·비디오테이프 제작·배급, 영화 상영, 녹음 및 시청각 후반제작 서비스 개방
 - ※ 면허 및 승인 조건, 현지 설립 시 외국인 지분 49% 제한
- (건설) 외국인 지분 70% 제한하여 개방,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4억 5천만 달러 초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00% 허용

개요

- 최근 무역의 디지털 전환을 반영하여 디지털 무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무역 분야의 양자 간 관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무역의 추가적인 진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촉진

상세내용

1. 전자적 전송물 및 디지털 제품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적으로 국경을 넘어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약속
 -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전송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의 무역 기반을 조성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 우리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자국산 또는 제3국산 디지털 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도록 약속

-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화 된 영화, 드라마, 음원 등 콘텐츠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산 또는 제3국산 디지털 제품과 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전 심사·심의 절차·적합성 평가 등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

2.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제한하지 않고, 서버·스토리지 등 컴퓨터 설비의 위치를 당사국 영역 내에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약속
- 국내에 위치한 기존 서버·스토리지 장비를 운용하여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상대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거래를 위한 기반 공고화

3. 디지털 무역 참여자 보호

- 당사국에 사기·기만적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 및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채택·유지 의무와 스팸메시지에 대한 규제할 의무를 부과
-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개인 및 기업이 사기 또는 개인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광고성 메시지에 노출 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조성

4.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

- 양국간 상이한 디지털 거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협력을 약속
- 공동의 위협으로부터 양국의 디지털 무역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

개요

- ☐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집행 절차를 규정하여 UAE내 우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상세내용

< 상표 >

1. 비전형 상표 및 단체표장 · 증명표장 보호

- ☐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반드시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소리로만 구성된 표지*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하고, 냄새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

* 예시: Intel 효과음, MGM 사자 울음소리, 할리데이비슨 엔진 배기음 등

- ☐ 상표의 보호 범위에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지 포함

2. 유명상표 보호

- ☐ 각 당사국이 유명상표 여부를 판단시, ①상표 등록 ②유명상표 목록에 등재 ③유명상표로의 사전 인식을 요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 유명 등록상표를 복제, 모방 혹은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도 유명상표 보호 적용

☐ 유명상표와의 혼동 및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해당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표장의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

※ 파리조약 제6조의2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

3. 악의적 상표

☐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이 사용할 의도 없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한당국이 법·규정에 따라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

4. 상표 보호 기간

☐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

5.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보호

☐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 ccTLD) 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 의도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 저작권 침해 자료의 배포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
-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규정

6. 국가 명칭의 상업적 사용 방지

- ☐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의 국가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

< 지리적 표시 >

7. 지리적 표시

- ☐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 독자적 제도 또는 그 밖의 법적 수단 등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보호하도록 보장
- ☐ 상표 또는 독자적 제도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또는 인정을 위한 행정 절차 규정
- ☐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는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자국에서의 출원일 또는 등록일 후 개시되도록 규정

< 특허 >

8. 특허 대상

- ☐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경우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 가능

☐ 아래 사항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환경 피해 방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보호 등을 위해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발명
-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치료·수술 방법

9. 특허 공지 예외

☐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때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의 공지에 포함된 정보는 선행기술에서 제외

* 발명가, 출원인 또는 자국 영역의 안밖에서 발명가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인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 출원일 이전 최소한 12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10. 특허의 절차적 측면

☐ 특허의 심사, 이의제기 및 무효를 위한 제도 규정

☐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또는 의견 진술의 기회 제공하고, 특허권자에게 등록 후 보정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산업 디자인 >

11. 산업 디자인의 보호

☐ 물품의 부분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자국 국내법에서 보장

- ☐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확보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요건이 그러한 보호를 획득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기회를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
- ☐ 산업 디자인의 이용 가능한 보호 기간은 출원일부터 최소 20년으로 규정

12. 산업 디자인의 절차적 측면

- ☐ 산업디자인의 심사, 이의제기 및 무효를 위한 제도 규정
- ☐ 산업디자인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등록 전 보정, 정정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3. 산업 디자인 공지 예외

- ☐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때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디자인 공지에 포함된 정보는 신규성 상실 요건으로 간주하지 않음

* 창작자, 출원인 또는 자국 영역의 안밖에서 창작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인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 출원일 이전 최소한 12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14. 저작권 · 저작인접권의 보호

- ☐ 양 당사국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베른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음반 보호 조약(WPPT)를 모두 준수하도록 규정

1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도의 균형

- ☐ 비판·논평·뉴스 보도·교육·학문·연구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고려하고 맹인, 시각장애인, 기타 독서장애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촉진하는 목적도 고려
- ☐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여, 양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제한이나 예외규정 마련

16. 기술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 ☐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 제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법·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 구제 제공

* 기술 보호조치 : 권리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 장치나 수단을 활용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보호조치 (예: DVD 복제방지기술)

-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전자적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고의로 제거·변경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제공

* 권리관리정보 : 저작물·실연·음반,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권리자) 식별 정보 또는 저작물·실연·음반의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 등

17. 집중관리단체

- ☐ 사용료의 공정·효율적·투명·책임 있는 징수와 분배를 담당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역할 인정

18. 권리자 추정

- ☐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행정·형사절차에서 저작물의 저작자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 집행 >

19. 침해에 대한 집행 일반 규정

- ☐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위하여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장래 침해를 억지하는 구제를 포함하여 이 절의 집행절차가 자국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 ☐ 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 조치 규정

20. 국경조치

- ☐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위조 상표 상품의 수입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는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상품의 반출 정지 신청 가능
- ☐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에서 수출되는 침해상품의 관세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관련한 상응 절차 규정

개요

-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WTO 정부조달 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미가입국인 UAE 정부조달 시장 진출 원활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WTO GPA

- 정부조달의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한 WTO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으로 우루과이 라운드(1994)에서 여타 WTO 협정과 함께 서명되어 1996.1.1. 발효
- 1997년부터 WTO GPA 개정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2014년에 WTO 개정 GPA 발효
- 현재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49개국이 가입(우리는 1997.1.1. 발효, 개정GPA는 2016.1.14. 발효), UAE는 미가입
- 동 협정 가입국은 부속서의 자국 양허표에 개방범위(양허기관 및 양허하한선 등)를 기재하고,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등 협정상 의무 부담

- 정부조달 일반원칙 및 절차 등의 협정문은 WTO 개정 GPA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GPA 미가입국인 UAE 정부조달 절차 진행 시 우리 기업에 대하여 GPA 가입국 수준의 의무 부담
- 협정 적용대상 조달(covered procurement)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전자적 수단의 이용, 대응구매(offset) 금지 등의 정부조달 일반원칙(제11.5조)이 적용

상세내용

1. 적용범위 (제11.2조)

- ☐ 조달기관(중앙정부)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임차·리스 등 계약을 통해 양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 적용
 - 조달기관·상품·서비스의 목록 및 기준금액은 부속서 11-가에 규정

2. 예외 (제11.4조)

- ☐ 당사국이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 ☐ 당사국이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3. 일반원칙 (제11.5조)

- ☐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 상품, 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내국민 대우)
- ☐ 다른 쪽 당사국 인과의 제휴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인의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 공급자를 다른 국내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 금지
 -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해 국내 공급자를 다른 국내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 금지

☐ 적용대상조달의 모든 단계에서 대응구매* 모색·고려·부과·시행 금지

*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조건·약속

4. 조달정보의 공표 (제11.6조)

☐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 및 그 변경이나 추가를 신속하게 공표

○ 각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그러한 정보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 응답으로 설명을 제공

5. 조달예정공고 (제11.7조)

☐ 제한입찰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하고 최소한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

○ 조달예정공고에는 △조달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등을 포함

☐ 조달 대상 및 조달예정공고 공표 계획 일자 등을 포함한 조달계획공고를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할 것을 권장

6. 참가조건 (제11.8조)

☐ 적용대상조달의 참가조건은 공급자가 조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역량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

- 그러한 능력은 조달 당사국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평가
- 조달 요건 충족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 조달기관 종전 낙찰 실적이나 당사국 영역 내 사전 작업 경험 요구 금지

7. 제한입찰 (제11.10조)

- 조달기관은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이거나,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 공급자를 차별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 한 제한입찰* 이용 가능

*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공급자에게 접촉하는 조달방법

- 제한입찰은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경우 등 협정문에 명시된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

8. 기술규격 (제11.12조)

- 조달기관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해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규정하지 않음
- 기술규격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그에 기초

9. 기간 (제11.14조)

- 조달기관은 조달의 성격과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조달 참가신청서와 응찰서를 준비·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원칙적으로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40일 이상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단축 가능

10. 투명성과 낙찰 후 정보 (제11.16조)

- ☐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조달기관의 낙찰 결정을 신속하게 알리고,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제공
 -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의 요청시 그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 및 낙찰된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 제공
- ☐ 제한입찰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에 관련된 기록을 계약 낙찰일부터 최소 3년 동안 유지

11. 부속서의 수정 및 정정 (제11.20조)

- ☐ 양허기관, 기준금액 등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이의가 있는 경우 45일 내에 제안된 수정에 대한 이의사항을 통보
 -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당사국은 기존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해 적절한 보상조정을 제안*
- * 사소한 개정 또는 순전히 형식적인 성격의 정정인 경우이거나 정부의 통제·영향력이 제거된 조달기관에 대한 수정인 경우는 제외

12.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제11.21조)

- ☐ 당사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특혜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그 조치가 투명하도록 보장
- ☐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도 내 그리고 적절한 경우 △조달 관련 포괄적 정보를 단일 전자 포털에 제공, △모든 입찰서류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 △조달을 전자적 수단을 통해 수행

13. 언어 [제11.23조]

- ☐ 각 당사국은 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조달예정공고와 조달계획공고에 영어를 사용

14. 정부조달 시장 개방 [부속서 11-가]

- ☐ 우리나라는 개정 WTO GPA 양허를 바탕으로 개방, UAE측은 UAE-이스라엘 CEPA 등 자국 기체결 FTA 양허 수준으로 개방
- (양허 기관) 양측 모두 중앙정부기관 개방
 - (조달 대상) 양측 모두 기체결 FTA 수준으로 상품, 서비스 개방
 - (기준금액) 양측 모두 기체결 FTA 수준으로 기준금액 설정

<한·UAE CEPA 정부조달 양허 비교(부속서 11-가)>

(단위 : SDR)

구 분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공공기관	
	우리측	UAE측	우리측	UAE측	우리측	UAE측
상품	13만	13.4만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서비스	13만	13.4만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건설 서비스	5백만	584.4만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 ☐ (양허 제외) 우리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급식 프로그램, 중소기업 유보분, 공항 조달 등 기체결 FTA 상의 예외 반영
- UAE측은 건설서비스, 군사적 성격의 구매, 의약품 구매 등 기체결 FTA와 유사한 예외 반영

개요

- ☐ 투자 촉진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중심의 장으로 법적 의무보다는 양국 간 투자원활화 협력활동을 중심으로 구성

상세내용

1. 목적 (제12.1조)

- ☐ 투자를 장려하고 원활화하며 양 당사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확보

2. 협력 활동 (제12.2조)

- ☐ 양 당사국 간 투자 확대 기회 모색, 투자 장애요인의 식별 및 해소 노력 등 투자활동 증진 및 원활화를 위한 협력 활동 규정

3. 투자원활화 위원회 (제12.3조)

- ☐ 양 당사국 간 특정 투자사안 논의, 다른쪽 당사국의 투자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사전 논의 등 역할 수행

4. 분쟁해결의 비적용 (제13.5조)

- ☐ 투자 원활화 협력 관련 사안은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 적용 제외

개요

- 경제협력의 목적(제13.1조)을 규정하고, 14개 협력범위(제13.2조) 및 협력수단(제13.7조)을 명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협력위원회(제13.8조) 설치 및 연례작업프로그램(제13.3조) 채택을 규정하여 실효성 담보 수단 확보
- 5대 핵심 협력분야(에너지·자원, 선진산업, 스마트농업·기후친화적 농업, 보건의료 산업, 바이오경제)는 협력 대상 및 방안을 구체화한 부속서 채택

상세내용

1. 협력 범위 (제13.2조)

- 에너지·자원, 선진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 및 공동제작, 스마트 농업·기후 친화적 농업, 보건의료 산업, 관광, 운송, 해운과 해양, 디지털 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 '경제협력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에서 양 당사국 합의로 협력 범위 추가 및 수정

2.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 (제13.3조)

- 경제협력위원회가 채택한 연례작업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역·투자 원활화 및 경제협력 활동 이행 등 지원

3. 공급망 (제13.4조)

- ☐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보장 및 교란·취약성 최소화를 위하여, 투명성, 다변화,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원칙에 기반한 협력 활동 추진

4. 경쟁 (제13.5조)

- ☐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쟁 정책 개발 및 반경쟁적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협의

5. 자원 (제13.6조)

- ☐ 상호 합의 및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경제협력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마련하고, 연례작업프로그램 이행 지원을 위하여 비당사국의 협력 및 기여를 고려

6. 협력 수단 (제13.7조)

- ☐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조직, 기술자·전문가 교류, 당사국 민간 부문과 기관 간 대화 및 경험 교환, UAE 정부 경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 공유 플랫폼 개시, 당사국 기업가 간 공동 사업 이니셔티브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적 경제협력 장려

7. 경제협력 위원회 (제13.8조)

- ☐ 경제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협력 및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 검토, 조정 및 개정

8. 부속서

☐ 에너지·자원

- 에너지 공급망 전반(석유 및 가스 탐사/생산, 석유정제/석유화학, 수소 생산/저장 등)에 걸친 협력 육성을 위하여 대체 및 재생 에너지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자원 효율적 관리 메커니즘 설계·개발 및 환경 영향이 낮은 에너지 인프라 건설

☐ 선진산업

- 스마트 기계, 자율제조,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 등 선진사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하여 B2B, B2G, G2G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합작투자 설립 및 자금 제공

☐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 지속 가능한 농업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보·우수 관행 교환, 공동 연구, 민간 부문 간 협업을 위한 기회 및 투자 증대

☐ 보건의료 산업

- 공중 보건 정책 및 관리, 의료 및 제약 정책 및 관리, 병원 보건 의료, 디지털 보건의료 및 보건의료 및 의료 장비의 신기술 분야 협력 장려
- 인력 훈련,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기관 홍보, 투자 및 재정 지원 등 협력 방안 마련

☐ 바이오경제

-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환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장비·기기 및 바이오자원 분야 협력 증진

- 바이오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연구소, 기업 및 투자자 간 중개 지원 및 공동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협력 분야 수행을 위하여 당사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바이오경제전담반을 설치
- 바이오공급망 복원력 협력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 최소화, 바이오공급망 취약성 평가, 공급원 다변화 및 바이오경제 필수 생산품의 저장용량 평가 및 최적화·향상을 증진
- 바이오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하여,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작업반 설치, 공급망 교란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 교란 대응 조치 및 정책 논의
- 바이오경제 산업의 수요 기반 인력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에 협업

개요

- 중소기업 협력의 일반원칙(제14.1조)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기회 증대를 위한 협력방안(제14.2조) 명시 및 협정 관련 정보(제14.3)를 제공하여 당사국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 및 성장을 지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문제위원회(제14.4조) 설치

상세내용

1.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협력 [제14.2조]

-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 참여 및 현지 시장 내 사업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센터,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수출지원센터 등 인프라 간 협력 증진
- 여성 및 청년 소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육성 및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위한 당사국 간 협업 강화
- 자본 및 신용 접근성 개선, 정부조달 기회 참여 및 변화하는 시장 조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모범사례 교환
- 국제 공급자, 구매자 및 잠재적 사업 파트너 등과 연결되도록 모바일 또는 웹 기반 플랫폼에 대한 참여 장려

2. 정보 공유 (제14.3조)

- ☐ 전체 협정문, 요약 및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 및 유지
- 웹사이트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동등한 웹사이트 및 당사국 내에서 무역, 투자 및 사업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의 웹사이트 링크 제공
- 통관 규정 및 절차, 지식재산, 영업비밀 및 특허보호권에 관한 규정 또는 절차, 기술 규정, 표준 및 품질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외국인 투자 규정, 사업자 등록, 무역 진흥 프로그램, 경쟁력 프로그램, 중소기업 투자 및 자금조달 프로그램, 과세 및 회계, 정부조달 기회 등 정보 제공을 검토

3. 중소기업문제위원회 (제14.4조)

- ☐ 중소기업의 협정에서 제공하는 상업적 기회 활용 제고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문제위원회를 설치
- 중소기업문제위원회는 매년 1회 회합하고, 그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개 요

- 분쟁해결절차는 “①당사국간 협의 → ②패널 설치 → ③패널보고서 제출 → ④패널보고서 이행 → ⑤보상 및 혜택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
-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협의, 패널, 이행, 보상 및 보복 등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 ‘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 시한 적용
 -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양허·기타의무 정지 절차를 규정
- 절차의 세부 규칙 및 중재패널 구성원의 의무 사항 등은 부속서 [절차규칙(부속서 15-가), 행동규범(부속서 15-나)]에 별도로 상세 규정

상세 내용

적용범위 (제15.3조)

- 분쟁해결 챕터는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관련하여, “①협정상 의무와의 불합치 조치, ②협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적용

※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2장(투자 원활화 협력), 제13장(경제협력), 제14장(중소기업)은 동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미적용

접촉선 (제15.4조)

- ☐ 각 당사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고, 분쟁에 대한 모든 요청·통보·서면 입장 등을 접촉선을 통해 전달

정보 요청 (제15.5조)

- ☐ 각 당사국은 협의,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요청 전에 문제가 되는 조치에 관한 서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20일 이내에 정보 제공

협의 (제15.6조)

- ☐ 서면으로 된 협의요청에 대해 피소 당사국은 10일 내에 응답하고, 30일(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은 15일)내에 요청받은 당사국 영역에서 협의 개시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제15.7조)

- ☐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 양국은 주선, 조정, 중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 및 양국의 입장은 비공개로 유지

패널 (제15.8조~제15.19조)

-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긴급사안 15일)내에 협의가 개시되지 않거나, 협의를 갖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60일 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국은 서면으로 패널설치 요청 가능(제15.8조)

- 패널은 3인으로 구성되며, 구성일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제15.9조)

패널 구성(제15.9조)	
◇ (인원)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1항)
▷	각 당사국은 패널설치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패널위원을 임명하고, 40일 내에 의장 역할을 할 세 번째 패널위원을 공동합의로 임명(2항)
◇ (패널의장)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10일 내에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각 3명의 후보자들로 구성된 각각의 명부를 교환한 후 추천으로 임명하며(5항), 기한 내에 명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명부에서 추천으로 임명(6항)

-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구성으로부터 15일 내에 분쟁의 긴급 사안 여부에 대해 예비 판정(제15.10조)

- 각 패널위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며(제15.11조), 교체될 필요가 있을 경우 패널의 업무는 후임 패널위원의 임명 시까지 정지(제15.12조)

※ 패널위원의 행동 규범은 부속서 15-나(행동규범)에 규정(제15.11조)

- 패널은 회부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조사결과 및 결론에 대한 기본 근거를 규정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의 개발을 위해 양 당사국과 정기적으로 협의(제15.13조)

- 패널은 회부된 사안을 조사하여 규정과의 합치성을 판단하고, 분쟁 해결 수단을 권고하고, 잠정 및 최종 보고서를 전달(제15.14조)

○ 패널은 국제공법에 따른 관습적인 해석규칙을 따르며, 그 판정은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의 변경 불가(제15.15조)

○ 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하며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취급(제15.16조)

※ 중재패널 절차의 기본적 사항은 제15.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절차 규칙은 부속서 15-가(패널 절차 규칙)에 규정(제15.16조)

○ 패널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관련 정보를 양 당사국에 요청 가능하며, 양 당사국은 이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응답(제15.17조)

□ 패널은 패널의 구성일로부터 90일 내에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고(제15.18조), 135일 내에 최종보고서 제출(제15.19조)

※ 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절반의 기한 적용

최종보고서의 이행 · 준수 (제15.20조~제15.22조)

□ 피소국은 패널의 판정을 신속하게 준수하고, 즉시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보고서 전달 후 30일 이내에 준수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통보하고 양 당사국 간 합의(제15.20조)

○ 합의하지 않은 경우, 제소국은 피소국의 통보 접수일 20일 이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고 피소국은 요청 20일 이내에 이를 전달(제15.21조)

□ 피소국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한달 전에 진전 상황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제소국과 공동위원회에 전달(제15.22조)

미준수의 경우 일시적 구제 (제15.23조)

- ☐ 피소국이 패널 판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 또는 대안적 방안에 대한 협의 개시
 - 제소국은 보상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소국에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겠다는 서면 통보를 하고 통보 20일 후 정지 가능
- ☐ 피소국은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사안의 검토를 위해 원 패널에 회부 가능

일시적 구제의 채택 후 준수 조치의 검토 (제15.24조)

- ☐ 피소국이 최종보고서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를 제소국과 공동위원회에 통보하면 30일 이내에 양허,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보상의 적용을 종료

절차의 정지 및 종료 (제15.25조)

- ☐ 양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패널은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되며, 정지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제15.26조)

- ☐ 분쟁이 ①이 협정, ②WTO협정, ③양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 포럼 선택 가능

-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 시, 다른 절차의 이용 제한

비용 [제15.27조]

- ☐ 패널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

상호 합의된 해결 [제15.28조]

- ☐ 양 당사국은 분쟁에 대하여 언제든지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를 수 있으며, 해결책을 공동으로 통보함에 따라 패널 종료

16

예외

일반적 예외 [제16.1조]

☐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 GATT 제20조와 관련 주해 적용 챕터 :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 GATS 제14조 적용 챕터 : 제8장(서비스무역), 제9장(디지털무역)

참고 : GATT 제20조/GATS 제14조상의 일반 예외조치

- ※ GATT 제20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 ※ GATS 제14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안보 예외 [제9.2조]

☐ 국가 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비공개 가능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UN헌장상 의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가능

과세 [제9.3조]

☐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협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

17

협정의 운영

공동위원회 (제17.1조)

-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동위원회는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나 작업반 설치 가능
- ☐ 공동위원회는 협정 발효부터 1년 내에 회합하며, 그 후에는 2년에 한번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회합
- ☐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결과와 운영을 검토·평가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조율
- ☐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로 결정을 내리고 권고

의사소통 (제17.2조)

- ☐ 각 당사국은 원활한 공식적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며, 모든 공식적 의사소통은 영어로 진행

18

최종규정

부속서, 부록, 부록서한 및 각주 [제18.1조]

- ☐ 협정문의 부속서(Annexes), 부록(Appendices), 부록서한(Side letters) 및 각주(Footnotes)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 구성

개정 [제18.2조]

- ☐ 어느 한쪽 당사국은 협정 개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은 제18.5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

가입 [제18.3조]

- ☐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집단이 이 협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국과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국과 가입국의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른 승인 후에 가입 가능

존속 및 종료 [제18.4조]

- ☐ 협정은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효력이 있음
- ☐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고,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 효력 발생

발효 [제18.5조]

- ☐ 양 당사국은 양국의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비준하고 서면으로 서로에게 통보하며,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협정 발효

정본 [제18.6조]

- ☐ 한국어본, 아랍어본,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나, 해석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